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2023. 3.

교 육 부

[인재정책실]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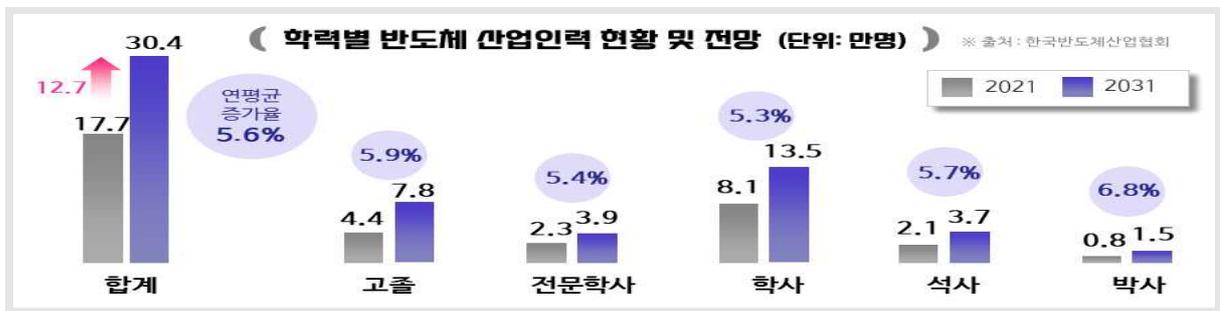
I. 추진 배경	1
II. 비전 및 전략	2
III. 추진 방안	4
IV. 평가 및 선정계획	9
V. 사업관리 및 향후 일정(안)	11
VI.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정 절차 안내	15

I

추진 배경

□ 반도체 인력수요 현황

-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경제안보적 중요성 부각에도, 반도체 기업의 만성적 인력부족, 양적·질적 미스매치 문제 지속
 - ※ 향후 10년간(22~31) 반도체 산업인력 추가 수요: 12.7만명(22, 반도체산업협회)
- 산업계의 수요가 큰 학사급 인재 배출 및 수요가 급증하는 석·박사 인력양성 기반으로 대학(학부) 단계 인력양성 혁신 필요



□ 대학의 반도체 인재양성 현황 및 문제점

-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공정(Value Chain)의 기술인재를 필요로 하나, 대학 내 이를 뒷받침할 기반(학과, 교육과정, 교원, 장비 등) 미흡
 - ※ 반도체 관련 학과(5개 소계열 ① 반도체 세라믹, ②전자기전(공학), ③신소재(공학), ④재료(공학), ⑤기계(공학)), 연간 신규 졸업생 중 반도체 기업 취업률은 10% 미만
-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완화(정원, 교원 등)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나, 대학 자체 투자 한계, 경직적 학사운영 지속
- 대학-기업 간 협약을 통한 계약학과 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융복합적 인재의 안정적 육성*,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에 제약

*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 중견중소기업 인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이 필수적

** 반도체 전공 석·박사: '17년(143명)→'18년(135명)→'19년(92명)/반도체 산업인력 실태조사, 2020

☞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학부교육 기반 구축

☞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도전적 투자, △다각적 기업 협업, △학사운영 개선 등을 시도하도록 지원하여 성공사례 축적·확산 추진

II

비전 및 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전

초격차를 확보할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목표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규모 및 질 제고

전략

단독형 · 동반성장형 육성

대학별 분야 특화 추진

+

양적 · 질적 성과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 지원

내용

반도체 특성화 인재양성 대학모델 집중 육성

**학과·전공 등
추진체계 구축**

-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목표 설정 (분야, 규모)
- 학과 · 전공 운영 등 이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체계 구축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 기초교육 강화 및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강화
- 기업 참여 및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교원, 시설 등
인프라 개선**

- 현장경험, 전문성 높은 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
- 반도체 교육 · 연구, 실습을 위한 환경 구축

**탄력적
학사 운영**

- 학교 밖 일·학습 경험 학점 인정 확대
-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산학협력, 혁신적 수업 독려)

**취업 및 진학
지원**

- 반도체 기업 취업 연계 지원
-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원 진학 등 연구역량 강화

범위

산업계

+

교육계

+

연구계

□ 단독형 · 동반성장형 인재양성 모델 개발

- 다양한 학문 기반의 융·복합 기술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및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확장성, 지역균형 등을 고려
- 개별 대학 단위의 집중 지원 모델(단독형)과 함께, 대학 간 협업 기반 모델(동반 성장형) 육성을 함께 추진

□ 대학별 역량과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 추진

- 반도체 일반·기초교육을 넘어 대학별 역량 및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여 대학 간 역할분담 체계 구축

< 반도체 인재양성 세부 특성화 분야 (예시, 복수선택 가능) >

- 회로 · 시스템: 반도체 회로 설계 및 시스템 기술 분야
- 소자 · 공정개발: 반도체 소자 및 공정소재를 포함한 공정개발 분야
- 소재 · 부품 · 장비: 공정·측정·검사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 및 소재 분야
- 테스트 · 패키징: 웨이퍼·패키지 테스트, 고밀도·하이브리드 패키징 분야

※ 기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는 제품기술 및 AI·자동차·전력반도체 등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분야 설정 가능

- '23년 대학별(대학연합별) 특성화 분야 선택에 제약은 없으나, '23년 선정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24년 이후 선정 규모 및 방향 검토 예정

□ 인재양성에 대한 양적, 질적 성과관리 강화

- 대학별 계획에 따라 양성(배출)되는 인력의 양적규모 뿐 아니라, 반도체 유관 분야로 진출(진학,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지속 관리
- 교육과정 운영 및 양성(배출) 인력의 역량에 대한 질적 평가 추진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학 특성화 모델 지원

-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교원, 시설 등 인프라 구축, 기업 협업을 확충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모델 운영 기반 마련 지원

Ⅲ

추진 방안

1

사업 개요

- (사업명)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 (추진예산) '23년 예산 기준 540억원(사업관리비 포함)
- (지원기간) 4년(2+2), '23년 선정대학('23~'26)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 (유형1) 단독형 : 수도권 2교, 비수도권 3교
 - (유형2) 동반성장형 : 수도권-비수도권 연합 1개,
비수도권 연합 2개

유형	지역 구분	구성	구성 조건	물량	지원 예산 (사업관리비 포함)
(유형1) 단독형	수도권	개별대학	-	2개교	45억 내외
	비수도권	개별대학	-	3개교	70억 내외
(유형2) 동반 성장형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연합	수도권 1교 +비수도권 1교	1개 연합	70억 내외
	비수도권	대학연합	권역 내 대학 연합(2~3교)	2개 연합	85억 내외

※ 유형별 지원 예산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며, 2~4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특정 유형이 계획된 물량 보다 적게 선정되는 경우(미신청 또는 최소기준 미충족 등), 수도권 3개, 지방 5개 범위 내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여 선정 가능

< 동반성장형 대학연합 구성·운영 요건 >

- ▶ (사업계획) 주관대학- 참여대학이 연합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
- ▶ (구성범위) 수도권 동반 성장형은 수도권 1교, 비수도권 대학 1교로 구성
비수도권 동반 성장형은 동일 권역 내* 최대 3개 대학으로 구성
- * 권역 구분: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 강원권, 동남권
- ▶ (사업비) 주관·협력 대학에 각각 교부, 결과 및 정산 보고는 주관대학이 총괄

- (지자체 및 민간 대응투자) 선정평가 시 총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으로 반영(필수요건 아님)

1. 대학별 인재양성 목표 설정 및 추진체계 마련

□ 반도체 인재양성 목표(규모, 특성화 방향) 설정

- 대학별 연간 배출가능한 반도체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최소 50명), 학생정원 확보, 전공과정 개설·운영계획 등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별도의 학과 운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 대학별 반도체 인재 양성 방식과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참고) 반도체 관련 부처협업형 인재양성(반도체 전공트랙, 인공지능반도체 융합인력양성) 참여대학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한 양성 인원이 동 사업 양성 인원 **중복하여 집계되지 않도록** 제시

- 동반성장형의 경우 **최소기준(50명)은 대학연합 전체 목표에 적용**하되, 대학별 목표는 컨소시엄 내에서 조정하여 제출(예시: A대학 30명 + B대학 25명)

- 사업기간 내 연차별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하되, (사업종료 이후)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및 전략 제시

* 중간평가 기준이 되는 2차년도까지의 구체적인 양성(배출) 인원 규모를 필수 제시

□ 대학 내 사업단 등 안정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 △교육과정, △시설·안전관리, △교원·학사제도, △기업 협업, △학생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사업운영 조직(체계) 구축
- 대학 내 유관 재정사업 간 역할분담, 중복투자 방지 장치 마련

2.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공학 기초교육 강화(MSC, Math, Science, Computer) 및 반도체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 융복합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 학부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하나, 학·석사과정 및 학·석사연계 과정 포함 가능

- 기업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참여 확충, 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PBL) 운영, 실습 및 인턴십, 프로젝트 교육 활성화

3. 우수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구축

□ 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

- 산업체 경력 및 높은 전문성(연구 및 기술개발 실적 등)을 가진 우수 인력을 교원(전임교원, 겸·초빙교원, 강사)으로 채용·활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23.7.1 시행)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임용 시 자격요건 완화, △전임교원의 겸임·겸직 제한 완화

※ 기업 현장, 교육, 연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현직 산업계 전문가'를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대학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혁신적 시도 권장

- 교원채용 이외에도 해외·산업계 전문가 등을 교육·연구, 실습 등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

* (예시) 반도체 기업 사내교육/OJT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업 인적자원 활용 등

□ 반도체 교육·연구, 실습 환경 구축

- 대학별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반도체 주요 공정을 실습할 수 있는 클린룸 등 전용공간과 프로젝트 공간(세미나실 등), 교육장비 구축

< 주요 공정/분야별 필요 장비(예시) >

설계	EDA Tool, 워크스테이션 서버 등
소자/공정 소·부장	항온항습, 공조시설, 배기가스 배출시설 등을 갖춘 클린룸 Furnace, RTP, Baker, Aligner, Coater, Etcher, Evaporator, Sputter, CMP 등
테스트/패키징	Probe Station, Bonder, Particle analyzer 등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전문기관에서 구성한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타당성 평가 진행 후 구축 결과를 관련 시스템(ZEUS)에 등록·관리

- 반도체 교육·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운영·관리체계 구축(인력 포함), 실험·실습(현장실습 포함) 위험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4. 탄력적인 학사 및 교원 인사제도 운영

□ 학교 밖 일·학습 경험, 활동 학점 연계

- 대학 내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다양한 일·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칙 등 개정

* (예시) 기업 또는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분야 단기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일정 조건 하에서 대학의 관련 교과 학점으로 인정

○ 동반성장형의 경우, 대학별 강점, 보유 자원을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및 운영 개선

※ 구체적 운영모델 및 방식은 대학별 여건 및 협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나,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수

< 동반성장형 참여대학 요건(학칙 개정 등) >

- ①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예시)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계절학기 학점 제한 완화, 유연(집중)학기 도입 등
- ②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개방: (예시) 학점교류 시, 수강신청 인원 수 및 학점 제한 완화, 정규/계절학기 운영 제한 완화, **인증서 및 학위 공동수여 방안 마련**
 ※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를 통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복수 학위수여 등 가능
 - 단, 공동학과 설치의 경우, 공동학위 부여를 위한 신입생 선발은 대학·학생지원 조정 계획 등에 따라 '25학년 이후 신입생부터 선발 가능)
- ③ 대학별 인적, 물적 자원 공동 활용(대학 간 이동수업, 교환학기제 등 활용)
 - (예시) **A, B 대학 간 융합전공과정 공동개설, 운영(A대학 설계 특화 교과목 운영, B대학 소부장 특화 교과목 운영) ⇒ 반도체 전공 공동 또는 복수 학위 수여**
 ※ (수도권- 비수도권 연합 고려사항) 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습교육 등을 대학협업 기업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환학기제, 이동수업, 현장실습 등 활용 가능
 ※ 대학 간 이동수업 및 교환학기제 등 활용(예시)

1~2학년(기초이론)		3학년(이론, 실습)		4학년(실습)	
교육 내용	입문 및 초급 수준의 반도체 이론 교육	교육 내용	중급 수준의 반도체 이론 및 실습 교육	교육 내용	반도체 세부 분야별 이론 및 실습 교육, 현장실습교육
교육 장소	본교 또는 세부분야 특화대학	교육 장소	본교 또는 시설장비 구축대학	교육 장소	본교 또는 협업 기업
교육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실습

□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 다양한 산업계 인사의 교육 참여, 현장연계 수업 활성화, 혁신적인 교수법 시도를 독려할 수 있도록 교원 수업시수의 탄력적 운영

* (예시) 강의규모, 강의의 질(혁신적인 교수법 시도, 현장 연계 강화)을 고려한 수업 시수 산정 방식 마련, 온라인 강의 시수 인정 방식 다양화 등

○ 산학협력 실적 및 산업체 경력이 교원업적평가와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 교원 자격기준 및 채용조건, 교원업적평가 등 관련 대학 내 규정 개선 등

5. 반도체 분야 취업 및 진학(대학원) 활성화

□ 반도체 관련 기업 취업 연계 지원

- 기업 협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턴십, 기업 협업 프로젝트 참여 인증 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취업 연계·지원

□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원 진학 등 연구역량 육성 지원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지원, 반도체 특성화 교육 이수 학생의 대학원 진학 지원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 지원

3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등

□ 사업예산 집행 및 운영관리

- 대학이 참여 중인 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사업 간 역할분담 및 중복투자 방지 대책 마련(연합형의 경우 참여대학별 작성 및 제출)

* 특히,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2.7.19, 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된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반도체), 디지털혁신공유대학(반도체 컨소시엄) 사업 참여 대학은 필수 작성

□ 사업성과 관리 및 분석

- 대학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규 참여에 따른 인재양성 성과 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하여 제시

* (예시)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반도체 전공 운영’으로,
⇒ ‘25년부터 융합전공 이수자 00명 배출 / ‘27년부터 반도체전공 이수자 00명 배출

4

상시 규제개선 지원체제 운영

- 대학별(대학연합별)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대학운영 규제에 대하여는 상시 수요 발굴 및 개선 추진

※ 교육부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규제개선 수요 심의(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7인, 교육부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 ⇒ 개선조치 시행

- 사업신청 단계부터 규제개선 수요를 발굴하여 검토, 개선 추진

IV

평가 및 선정계획

1

신청대상 및 요건

- (공통)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 (유형1) 단독형: 대학별 특성화 계획 수립
- (유형2) 동반성장형: 대학 연합 단위 특성화 계획 수립

< 연합형 특성화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 >

- ① 대학 간 사업 공동 추진 및 공동학사 운영을 위한 대학 간 협약서
- ② 사업 추진체계에 대학별 역할 분담 및 인적·물적 자원 공동활용 방안 및 계획(시설, 장비 및 교원 등)
- ③ 참여대학 간 학사제도 공동 운영 계획(예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계획, 공동학과(전공) 운영계획, 공동/복수 학위/인증 수여 계획 등)

2

선정 평가

- (평가주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 위원단'을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
※ 산학연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구성
- (평가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현장조사(방문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

서면평가	⇒	현장조사* 및 발표평가	⇒	최종선정
'23.4		'23.4~5월		'23.5.

* 신청서 등에 제출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 등 확인

- (선정기준) 사업계획 평가(서면, 현장+발표)를 통해 평가위원단의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단을 선정
 - 단, 평가점수가 총점의 70%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독형, 동반성장형 공통적용)

○ 평가지표(안)

영역	항목	단독형	동반 성장형	
1. 사업 목표 및 비전 (80/80)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정성 - 대학의 특성화 방향 및 인재양성 목표 수준 타당성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80	80	
2. 사업추진 기반 (250/150)	기본 교육 여건 - 관련 학과(전공) 운영 규모, 학생 충원률, 취업 및 진학 현황/여건 등	50	50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 장비 및 시설 현황 - 우수교원 확보(연구 및 기술개발 실적 포함) - 교육과정 운영 실적(인재양성 사업 참여 실적 등)	200	100	
3. 사업 추진 내용	(1) 추진체계 마련 (100/125)	사업 추진체계 구성/운영 계획의 적정성	50	75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의 적정성 - 인재양성 계획의 구체성, 적극성/차별성 및 타당성 (기존 사업/체제와의 관계 등)	50	50
	(2) 교육과정 개발·운영 (100/100)	교육과정 개발, 운영 계획의 적정성 - 교육과정의 체계적 개발 및 학문간 융합/연계 여부 - 특성화 방향 및 교원/인프라 계획 부합 여부 - 기업참여 및 협업 계획의 구체성 등	100	100
	(3) 교육인프라 구축 (100/150)	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 계획	50	75
		교육/실습 환경 개선 계획 - 특성화 분야 연계 시설, 공간, 장비, - 실험실습 관련 안전관리 대책 포함	50	75
	(4) 학사 운영 (100/125)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계획의 적정성	50	75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계획의 적정성	50	50
(5) 학생 취업/진학 (50/100)	학생 취업, 진학 지원 계획의 적정성 - 우수인재 유치 계획 등 포함	50	100	
4.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 (120/70)	예산배분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20	20	
	중복투자 방지계획의 적정성 -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역할분담, 중복투자 방지계획	100	50	
5. 성과관리 계획 (100/100)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 (자율)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 성과도출 및 환류 계획의 적정성	100	100	
6. 가점	지자체·민간 대응투자의 구체성, 적정성	(100)	(100)	
계		1,100	1,100	

V

사업관리 및 향후 일정(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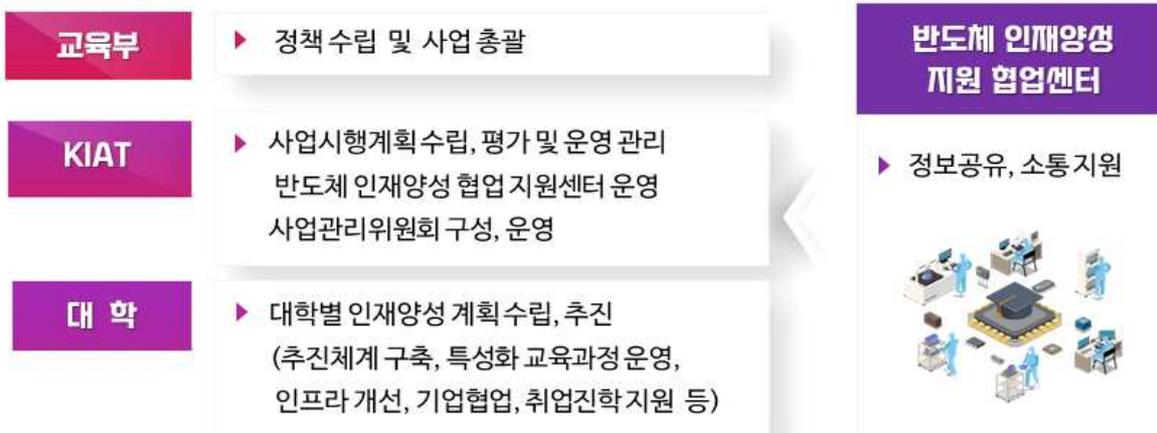
추진 체계

□ 사업 운영 및 관리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정부출연금 집행 총괄 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운영 및 집행 관리 등 전문기관 역할
 -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선정평가 시행, 성과평가 실시·분석
 - 전문가풀, 평가단(컨설팅단),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의 평가,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설치

- (주요 내용)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교육계-산업계-연구계 협업 및 소통을 위한 지원기구 운영
 - ※ (근거) 반도체 인재 양성 협업 지원센터' 15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22.9.16)
- (역할 및 기능) 정례 협의 및 공동 협업 프로젝트 추진 지원
 - * (예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이행 관리,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 및 전망 고도화, △반도체 인재 양성정책 개선 자문, △인재 DB 구축 등
- (운영방식)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의 관리비 일부를 활용하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별도 센터 구축



□ 사업비 관리 및 집행, 결산

- (일반원칙) 대학별 사업비는 대학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산학협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사업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운영
- 동반성장형 모델의 경우,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 참여대학의 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주관·참여대학에 직접 교부
- (집행자율성) 대학별 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주요 항목(비목) 간 제한 없이 집행 가능
 - ※ 단, △간접비(사업의 5%), △교원 인센티브(사업의 3%)만 상한 기준 준수
- (집행기간 등) 사업비는 매년 2월 말까지 집행하며, 구체적인 이월 범위 및 절차는 별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
- (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비 관리주체(대학)는 매년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정산 및 반납
 - ※ 동반성장형 모델의 경우, 주관대학이 사업비 집행결과 및 정산을 종합하여 보고

□ 재정 집행 책무성 확보

- (제재조치) 사업 추진 중 ¹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²횡령 등 부정·비리가 확인되면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¹법령 위반*, ²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대학 사회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 제재 가능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후속조치 등)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
 -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대학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대학 자체 부담이 원칙

□ 성과관리 지표

- (개요) 대학별로 달성해야 하는 필수성과지표와 대학별 특성화 계획에 따라 자율 설정·관리하는 자율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점검
 - (필수성과지표) 사업추진에 따른 △대학 내 인재양성 체제 구축, △교원 및 인프라 개선 현황, △배출 인력의 규모·질 등 포함
- ※ 필수성과지표(안): 세부사항은 연차평가, 중간평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영역	주요 내용 (양적, 질적 실적)	점검 시기 및 방법		
		연차	중간	최종
대학 내 지원체제	추진(운영) 체제 마련	○	○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	○
	학사 및 교원제도 운영 개선	○	○	○
인프라 구축/개선	우수 교원 유치 및 활용	○	○	○
	교육환경 구축 및 개선	○	○	○
기업협업	특성화 분야 연계 기업 협업		○	○
인재양성 규모 및 질	반도체 기업 취업/진출 실적		○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호/만족도	○	○	○
	반도체 분야 진학/연구 실적		○	○
	배출 인력 규모		○	○
	배출 인력의 질(산업계 평가 등)			○
동반성장형 (유형2)	교육과정 공동운영 실적 (공동 교육과정 이수 현황 등)		○	○

- (자율성과지표) 자율성과 지표는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감안하여 필수지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별 자율 설정

□ 성과관리 계획

- 성과평가 실시
 - (연차평가) 매 사업 기간 종료(2월말) 후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미진한 대학에 대하여는 별도의 컨설팅 실시
-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가/감 예정,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 별도안내 예정

- (중간평가) '23~'24년 2년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미진 시, 사업종료, 사업비 조정, 컨설팅 등 후속 조치 검토

○ 컨설팅 지원

-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연차·중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실화 및 개선·보완 지원

○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연계

- △성과관리 전반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고, △평가·컨설팅에서 도출한 대학 필요자원에 대해 산업계·연구계와 협의

* 예시 : 기증 예정인 장비와 사내 강사 Pool을 조사하여 필요한 대학과 연계

□ 성과공유 및 확산

- (공유) 컨설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기관* 등과 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

*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 등 포함

- (포상) 전문기관 및 반도체 인재 양성지원 협업센터 차원의 워크숍·포럼 등을 추진하고, 우수 교·직원에 대한 별도 포상 등 지원

4

향후 추진일정(안)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23.2월
※ 참여대학(연합) 가신청 접수: '23.3월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 ~'23.4월
- 선정평가 실시 : '23.4월~5월
-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3.5월
- 교육과정 개설 준비 : '23.5~8월
- 교육과정 운영 : '23.2학기(필요시 계절학기 활용)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 '24. 3월

VI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정 절차 안내

□ 추진 근거

- 반도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22.11)되어 정부는 동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음
 -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아래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의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음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

□ 지정 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 선정결과 확정, 제공	교육부 → 통합사무국	'23.5월 ~
↓		
지정위원회 운영	통합사무국	'23.6월 ~
↓		
지정검토 결과보고	통합사무국 →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23.6월 ~
↓		
특성화대학 지정 확정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23.6월 ~
↓		
특성화대학 지정결과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3.7월 ~
↓		
지정결과 통보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23.7월 ~

□ 행정 사항

- 특성화대학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별도의 특성화대학 지원신청서를 대학의 총장 명의로 제출
 - ※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요건 부합 여부와 지원사업 선정을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